

광주광역시 학생인권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인권에 관한 광주광역시교육청 및 관할 학교와 교사·학생·학부모의 책임과 역할을 정하고 학생 인권 보장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인권을 증진시키고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이란 「세계인권선언」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2. “학교”란 광주광역시 내에 소재한 「초·중등 교육법」 제2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을 말한다.
3. “학생”이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재적 중인 자를 말한다.
4. “교사”란 「초·중등 교육법」 제19조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모든 교원과 직원, 「교육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5. “학부모”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학생”의 부모, 친권자나 후견인, 또는 보호·양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장기적인 계획과 이를 구현하는 종합적인 정책을 시행하여야 하며, 학생인권의 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각종 활동에 대해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② 학교와 교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감의 정책에 협력하고 당해 시설 내에서 인권의 역사와 정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며 학생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학생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규범을 준수하고 생명과 인간의 존엄을 중시하며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④ 학부모는 가정에서 인권 교육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학교와 협력하여 학생이 올바른 인권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인권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보장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학생인권증진계획(이하 “인권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인권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학생 인권 보장 및 증진의 기본 방향
 2. 학생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단계별 시책 및 사업 계획
 3. 학생 인권 보장 및 증진 활동을 위한 자원 조달 방안
 4. 교사, 학생, 학부모의 인권 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및 환경 조성 방안
 5. 학생 인권 관련 실태조사와 인권 침해 요소의 현황 및 개선 방안
 6. 학교 평가에서 학생 인권 보장 실태를 반영하는 방안

7. 그 밖에 학생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주요 사항

③ 교육감은 인권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를 제19조에 따른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장 학생의 인권

제5조(학생의 지위) 학생은 인간으로서 내재적 가치와 존엄성을 지닌 자율적인 존재이며 헌법과 국제인권 조약에 의거 인격적 주체로서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6조(학습권) ① 학생은 교수·학습 과정에서 인격적 주체로서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학습권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③ 학교는 일시적 장애를 포함한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등 학생 소수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최 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생은 자발적이고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강제적인 교육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7조(평등권) 학생은 어떠한 이유로든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대우와 배움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제8조(자치와 참여권) ① 학생은 자신을 대표하는 기구를 비롯하여 다양한 모임을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직접, 또는 대표를 통해 학교생활 및 정책결정과정에서 참여하여 의견을 표명하고 실질적 참여를 위한 권한과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9조(신체의 자유) ① 학생은 존엄한 인격체로서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② 학생에게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대우나 체벌, 강제노동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학생은 머리 모양, 복장 등 자신의 생활양식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제10조(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① 학생은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과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행동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특정 종교를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제11조(표현의 자유) ① 학생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서명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권리를 가진다.

③ 학생은 학교 안팎에서 평화적인 집회나 시위를 열거나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④ 학생은 학교 밖 모임이나 단체활동 및 정치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12조(사생활과 개인 정보의 보호) ① 학생은 소지품과 사적 기록물, 사적 공간 등 사생활의 비밀을 유지하고 감시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은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둘러싼 감정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③ 학생은 과도하게 자기 정보를 수집당하지 않고, 정보의 유출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④ 학생은 자신에게 유익하고 필요한 정보에 다양하게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 제13조(건강권과 안전권) ① 학생은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환경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은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 또는 집단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 ③ 학생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안정 및 성장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과 치유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14조(휴식과 문화에 대한 권리) ① 학생은 개성 있는 자아의 발달을 위한 적절한 휴식과 놀이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은 건강한 문화를 형성하고 누리기 위해 공간 및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15조(적법한 징계 절차를 누릴 권리) ① 학생은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인권의 기준에 부합하는 정당한 규정과 적법한 징계 절차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 ②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는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진행되어야 하며, 학교는 이러한 목표를 위해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 제16조(특별한 보살핌을 받을 권리) ① 가정에서의 학대, 사법처리, 경제적 착취, 폭력 피해 등 특별한 상황에 놓인 학생은 특별한 보살핌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존중하며, 최상이 이익에 부합하여야 한다.

- 제17조(권리를 지킬 권리) ① 학생은 처벌이나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자신과 다른 사람의 빼앗긴 권리를 되찾거나 되찾는 일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은 제1항의 활동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 ③ 학생은 자기의 권리가 무엇인지를 알 권리를 가진다.

제18조(학생 인권 보장의 원칙)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학생의 인권은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며,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한 학생의 인권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의거 총체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제3장 학생인권위원회

제19조(학생인권위원회) 교육감은 학생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학생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0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생인권증진계획의 연도별 시행 결과에 대한 심의
2. 학생 인권에 관한 조례(입법과정 중에 있는 조례안을 포함한다)·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 표명
3. 학생인권침해의 유형·판단기준 및 그 예방조치 등에 관한 지침의 제시 및 권고
4.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에 대한 조사 및 시정권고
5. 학생 의회의 지원
6. 학교생활규정에 관한 점검 및 권고
7. 그 밖에 학생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명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시교육청 교육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학생 인권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70%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1.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지역사무소가 추천하는 사람
2. 교육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3. 청소년 단체 및 학부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 인권단체에서 추천한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5. 교원노동조합 및 교원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6. 학생의회 의원
7. 교육청의 학생인권 담당 공무원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가운데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의 결원이 생겨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의 남은 임기가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정기회 : 연4회 이상
2. 임시회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심의사항을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4조(사무국) ①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공무원 및 전문조사원 등 위원회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한 인원을 둔다.

- ③ 사무국에 배치된 공무원 및 전문조사원은 위원장의 지휘에 따라 사무를 처리한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사무국 및 전문조사원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활동이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인권에 반하는 활동으로 위원회의 품위에 손상이 되었다고 위원회가 의결한 경우

제26조(학생인권영향평가) ① 위원회는 교육감이 제정, 입안하려고 하는 조례나 정책 등이 학생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때에는 학생인권영향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한다)를 작성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교육감이 특별한 사유 없이 평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평가서 검토가 필요할 경우, 교육감에게 추진 중인 조례나 정책 등의 개선 및 중단을 권고할 수 있다.
- ③ 교육감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요구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7조(학생 인권의 상담) ① 각 지역교육청별로 학생인권상담실을 둔다.

② 제1항의 상담실은 학생의 인권에 관한 상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속한 조치가 필요한 등 시급한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학생 인권 침해의 구제 및 조치) ① 위원회는 학생이 인권 침해에 대해 상담 및 구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연락·통신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② 학생이 인권을 침해당하였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위원회에 그에 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구제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사건에 대하여 조사한 후에 교육청, 학교 및 교사에 대한 시정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교육감에게 통보하고, 그 요지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은 교육청, 학교 및 교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조치결과를 즉시 위원회 및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학생 인권 침해의 조사) ① 위원회는 제20조 각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교육청 및 학교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교사 및 관계공무원에게 질의할 수 있다.

- ② 제27조 제2항의 구제신청에 대해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방문조사를 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을 방문 조사할 경우 학생 및 관계자와 면담할 수 있고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구술 또는 서면으로 사실이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은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운영세칙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학생의회

제32조(학생의회) 교육감은 시 교육정책에 대하여 학생의 의견을 구하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학생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33조(의회의 구성) ① 의회는 각급 학교의 학생회장이나 학생 대표로 구성한다.

② 의원 가운데 의장 1인과 부의장 3인을 호선하며, 의장단은 회장, 부회장을 포함하여 임원을 10인 이내로 둘 수 있다.

③ 의장단의 임기는 1년이고 연임할 수 없다.

④ 임원이 제36조에 의하여 결원이 생긴 경우 새로이 위촉하되 그 임기는 전임 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4조(의회의 운영) ① 의회는 그 주체인 학생이 정한 방법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운영한다.

② 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의장이 소집한다.

1. 정기회 : 연4회 이상
2. 임시회 :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 ③ 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5조(의원의 임무) ① 의원은 해당 학교의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의회에 성실히 참여하고, 학생들의 인권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의원의 자격 상실)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1. 전학 등으로 소속을 달리한 때
2. 퇴학 등으로 학생의 지위를 상실한 때
3. 질병 등 일신상의 이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
4. 재적의원 2/3의 결의로 자격상실을 결의한 때

제37조(의회의 역할) ① 의회는 시 교육정책이나 학생 인권 관련 사항을 심의 의결하여 교육감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을 존중하고 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8조(의회에의 지원) ① 교육감 및 학교는 의회에 학생 참여를 유도하고 회의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의회의 안정적인 활동을 위한 공간을 설치하고 필요한 기자재를 배치하여야 한다.

- ③ 교육감은 의회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 ④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국은 의회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실무적인 지원을 행하여야 한다.

제5장 인권 교육 및 연수

제39조(학교 내 인권교육 및 연수) ① 학교는 학기당 1시간 이상 학생 인권에 관한 학생 교육과 교사 연수를 연간 계획에 의해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에 의한 학생 교육의 내용에 대해서 학생회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40조(교사 대상 인권 연수) ① 교육감은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주관의 신규교사 직전 연수 및 교사 대상 모든 자격 연수 시 학생 인권에 관한 교육 내용을 2시간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육청 주관의 교사 직무 연수 시 학생 인권에 관한 교육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교의 학생 교육과 교사 연수를 위한 개발 및 지원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제41조(학부모 교육) ① 학교는 학부모에 대하여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 또는 간담회를 연 2회 이상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부모에 대한 인권교육 자료를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제6장 기타

제4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제3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는 이 조례가 공포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구성하여야 한다.